

1. 개정이유

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시 해킹 방지를 위해 원격 접근·침입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자의 원격 접속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바,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운행자가 아닌 자가 원격으로 접근·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임을 명확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이 지정한 자 이외의 자의 원격제어 금지(안 제 26조의2제1항제6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2제1항제6호 중 “원격으로 접근·침입하는”을 “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이 지정한 자 이외의 자가 원격으로 무단접근·침입하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6조의2(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)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자율주행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<u>원격</u>으로 접근·침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 것</p> <p>7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26조의2(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-- <u>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이 지정한 자 이외의 자가 원격으로 무단</u>----- ---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